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68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4월 23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이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2541호)과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2615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대안)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‘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’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·관리하고자 함.
- 도시숲, 생활숲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방문 시민과 반려동물 등이 방제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 예방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).
- 나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(안 제14조제3항제4호 신설).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제12조”를 “제13조”로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“병충해”를 “병해충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은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제13조----- ----- -----.
제10조의2(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,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신설〉	제10조의2(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병해충 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.
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	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
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〈신 설〉

4. (생 략)

----- 하고, 제4호에 해당하는
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
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